2023학년도

참되고(德), 알차고(知), 굳세게(體)

학생생활규칙



설월여자고등학교

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 및 범위) 이 규칙은 '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'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,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 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근거) 이 규칙은 「교육기본법」제12조 제1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8조의 4(학생의 인권보장), 제20조 제4항, 「동법시행령」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,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, 「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」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
제4조(규칙 적용의 원칙)

-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의 인권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、「광주광역시 학생인 권 조례」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,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 해서는 안된다.
-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제5조(학교 구성원의 책무)

- ① 학교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생의 권리)

- ① 학생은「대한민국헌법」과 「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, 「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」,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.
-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
-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.

- ④ 학생은 체벌, 폭행, 따돌림, 집단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.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-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(단,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, 학부모,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)
-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,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 받지 않는다.
-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.
-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 터 보호받아야 한다.
-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
-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.
- ①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,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 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④ 학생은 직접,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⑤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의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 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.
- ⑥ 학생은 학습부진, 폭력피해, 비행일탈, 빈곤,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⑩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.
- ⑩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.
- (19)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성별, 종교, 민족, 나이, 성적지향, 신체조건, 경제적 여건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2장 학생생활

제7조(대인 관계에서 자세)

-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따돌림,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당하지 않는다.
-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.
-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.
-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.
- ⑥ 욕설,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.
- ⑦ 성별, 종교, 민족, 언어, 장애, 나이, 성적지향, 신체조건, 경제적여건,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, 차별적 언사나 행동,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-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⑨ 성(性)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-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
제8조(시설이용 및 환경)

-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,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.
-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(강당)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.
- ④ 방과 후,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- ⑥ 수돗물,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.

제9조(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)

-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.
-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(절도행위 포함)했을 경우 해당 학생,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0조(폭력 등에 관한 대처)

-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,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,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
제11조(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)

-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.
-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,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.
-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.
-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.
-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,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, 준비물을 지참하고,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.
-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,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 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.
-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,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,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.
-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제12조(휴식 시간)

- ① 휴식 시간(식사 시간 포함)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.
- ② 휴식 시간(식사 시간 포함)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.
-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.
-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.
-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.

-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, 오토바이, 각종 스케이트 및 보 드를 타지 않는다.
- ⑦ 휴식 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.
-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⑨ 화투,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.

제13조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

학생 개인 및 학교,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 육 확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① 성냥, 라이터, 폭죽, 드라이기,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
- ② 칼, 쇠파이프, 공구류, 고무총,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
-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
-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
-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,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 은 물품
-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
- ⑦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향정신성 약물 일체
-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

제14조(용모 및 복장)

- ① 두발, 복장, 장식,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. 단,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지나친 개성 표현은 지양한다.
- ② 학교 구성원(학생자치회, 학교운영위원회)에 의해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교복을 변형시키지 않고 바르게 착용한다.
-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.
- ④ 타인을 비하·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,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.
-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.
- ⑥ 1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변형시키거나 바르 게 착용하지 않는 학생은 '기본생활습관정착을 위한 성찰교실 운영 계획'에 의해 처리한다.

제15조(정보통신 윤리)

-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, 사생활을 존중·보호하고,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다.
- ② 음란·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.
-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
제16조(전자기기 사용)

- ①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MP3 등)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,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. 단,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,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교육활동 과정(조·종례 시간, 수업, 청소 활동, 학교행사, 체험활동)에서 전 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.
-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
- ⑤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.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.
-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.

제17조(학내 표혂과 집회)

-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,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.
-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,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④ 게시판 사용,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8조(기타)

-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 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.
-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, 담배, 본드 등 약 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.
-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.
-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.

제3장 생활교육위원회

제19조(생활교육위원회)

-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 회(이하 '생활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- ② 생활위원회는 교감, 생활교육(안전) 담당부장, 생활교육(안전) 담당교사, 교무기획부장, 각 학년 부장, 환경보건부장, 전문상담교사로 하며,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.
- ③ 생활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,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.

제20조(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

-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
-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학생생활교육

제21조(체벌금지)

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.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도구에 의한 체벌
- 2.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
- 3.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
- 4.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5.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

제22조(교사의 권한)

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
- ② 교육환경 조성
- ③ 시정 요구
- ④ 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
- ⑤ 학생선도(징계)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
-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

제23조(훈계·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)

-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.
-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·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
- 2.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
- 3.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
- 4.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
- 5.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
- 6. 훼손 시설·물품,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, 청소 명령
- 7. 성찰교실 이수 통보
- 8. 학부모 통보 및 상담
- 9.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
-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4조(성찰교실 운영)

① 학교장은 기본습관 정착을 위해 성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성찰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하며, 지도 및 운영은 전교사가 함께 진행해 나아간다.
- ③ 성찰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,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제25조(소지품 검사)

-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,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.
-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는 안 된다.
-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,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 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.
-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한다.
-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, 상황이 급박한 경 우 선 대처 후,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.
-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,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.
-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,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
- 2.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,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 보를 접수한 경우
- 3.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, 본인,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

제26조(전자기기 사용 지도) 전자기기 소지 규정 세부 지침 적용[부록1]

-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.
- ② 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,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
제27조(징계의 원칙)

-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의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.
-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,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 당할 수 있다.
-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.

제28조(징계의 종류와 기간)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학교내 봉사 : 4일 이내(1일 4시간)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2. 사회봉사: 5일 이내(1일 8시간 이내)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3. 특별교육이수: 10일 이내(1일 8시간 이내)의 기간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하다.
- 4. 출석정지 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.
- 5. 퇴학처분 :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6. 훈계.훈육, 교실에서 분리 조치, 상담지도,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,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.

(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특별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 내용으로 징계 의 수위를 결정한다.)

제29조(징계의 방법)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내 봉사 :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

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(교 내 환경 미화, 교재.교구 정비,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, 학교 인성교육프 로그램. 기타 적절한 활동 등)을 하여야 한다.

- 2. 사회봉사: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 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.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,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 한다.
- 3. 특별교육이수 :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·지정·위탁한 교육기관 에서 교육 및 상담·치료를 받아야 한다.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.
- 4. 출석정지: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. 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, 학 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.
- 5. 퇴학처분 :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.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'가정학습'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해당 학 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,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0조(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)

- ① 학교 생활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.품성.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(또는 상담교사)로부터 청취한다.
-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.
-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'위원회 개최', '의견 진술(소명) 기회 보장', '대리인 선임권 보장'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(유 선 통화 일시,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.)

제31조(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)

-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.
-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,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,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,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

있다.

-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·확정할 수 있다.

제32조(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)

- ① 생활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,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'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'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.
-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청구인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
- 2. 피청구인
- 3.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
- 4. 청구의 취지 및 이유
-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.

제33조(징계의 유보, 경감, 해제, 가중 등)

-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,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.
-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수 있다.

제34조(사후 조치)

- ①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·지도하고,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·보존한다.
-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(중학교의 전학 등)와 동령 제89조(고등학교의 전학 등)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

학 할 수 있다.

제35조(징계의 기준)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항	내용	교내 봉사	사회 봉사	특별 교육	출석 정지	퇴학 처분
1	상습적인 욕설, 차별·비하,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	0	0	0	0	0
2	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	0	0	0	0	
3	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, 폭언, 협박, 위협, 폭행 등	0	0	0	0	0
4	주민들이 진정,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	0	0			
5	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	0	0			
6	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, 또는 훼손		0	0	0	0
7	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	0	0			
8	수업,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	0	0	0	0	0
9	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		0	0	0	0
10	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			0	0	0
11	흡연 및 음주	0	0	0	0	0
12	본드, 대마초, 환각제, 마약류 등 복용		0	0	0	0
13	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		0	0	0	0
14	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	0	0			
15	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	0	0			
16	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, 상습적 위반	0	0			
17	타인의 권리,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 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	0	0	0	0	0
18	타인 및 학교 시설,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		0	0	0	0
19	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	0	0	0		

제5장 규칙의 개정

제36조(규칙 제·개정심의위원회)

-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, 학부모, 교원 대표로 구성된「규칙 제.개정심의위원회」(이하 '위원회')를 두고, 매년 구성 하여 운영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,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/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

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다.
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 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37조(개정안의 발의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- 1. 재직 교원 1/3 이상의 동의
- 2. 학생대의원 1/3 이상의 동의
- 3. 학부모회 1/3 이상의 동의
- 4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
- ② 단,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,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38조(문헌조사 및 의견수렴)

-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다.

제39조(심의 및 결정)

-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
제40조(연수 및 교육)

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
부칙

-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,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,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혐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칙

- 제1조 이 규칙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,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,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칙

- 제1조 이 규칙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,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,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[부록1]

전자기기 규정 위반 시 지도[세부 지침]

- 1) 1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.
- 2) 2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교육활동 종료 후 돌려받는다.
- 3) 3회 규정을 어길 시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교사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일 하교 시 돌려 받는다. 그리고 지도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지도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, 담임교사는 가정 통신을 발송하여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규제가 필요함을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.
- 4) 4회 이상 규정을 어길 시 학생생활규칙 제35조 16항에 의거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.
- 5) 누적 횟수는 한 학기로 규정한다.

-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7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,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 고,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